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본 약관은 그린하이브리드 체크카드약관에 귀속된 신용공여와 관련한 약관입니다.

(시행일 : 2021. 01. 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원)

- ①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 ② 본인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비카드(주) (이하 "카드사"라 함)에 신용카드 (이하 "카드"라 함)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 ③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이 자칭하고 대금의 지급 및 기타 카드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제2장 카드의 발급 및 관리 등

제3조 (카드의 발급)

- ①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신청인이 카드사에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관련 절차 등을 거쳐 발급합니다.
- ② 카드모집자가 가족회원을 모집할 때 지금의 유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 ③ 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청인에게 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카드의 거래조건 및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신청방식,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등을 알려야 합니다.

제3조의2 (가족카드 발급 등)

- ① 본인회원은 카드사에 가족카드 발급(갱신·대체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본인회원의 신용상태, 가족관계, 가족의 동의 등을 확인하여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② 가족카드자는 본인회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에게 발급됩니다.
- ③ 카드사는 가족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카드를 발급할 경우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에 안내합니다.
 1. 가족카드 연회비 및 가족카드 발급 가맹매수
 2. 가족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및 제공 범위
 3. 가족카드 연말정산 관련 사항
 4. 휴대폰 메시지 및 카드대금 청구서 제공사실 및 방법
 5. 가족카드 포인트 영도방법
 6. 이혼, 사망, 파산 등 가족관계 변동시 본인회원이 가족회원의 카드사 신고방법 및 절차
- ④ 제2호의 가족카드 변동이 되었을 때 가족카드를 정지/사지할 때는 경우 의도하지 않는 카드사유 및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⑤ 본인회원이 요청할 경우 가족회원의 동의없이 가족카드가 한도감액·정지·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⑥ 9. 기타 가족카드 이용정지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 ① 본인회원은 본인회원이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가족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인회원이 발급을 신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집니다.
- ②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카드의 한도감액·정지·해지를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본인회원의 요청에 따라 가족카드 한도감액·정지·해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에 알려줍니다.
- ③ 카드사는 제26조에 따라 가족회원에 본인회원의 미상환 채무를 추심할 수 없습니다.
- ④ 본인회원은 카드사가 정하여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회원 명의의 계좌를 가족카드 이용대금 자동이체결제계좌로 지정해 둘 것을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는 가족회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제4조 (유효기간 및 재발급)

- ① 카드의 유효기간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카드의 잔여 유효기간까지의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 ③ 카드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④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전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문 메시지(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 전송됩니다. 팩스(FAX), 이메일 등 전자우편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 거절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거나,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거절됩니다.
- ⑤ 갱신 또는 대체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 전자우편(E-MAIL) 및 전자거래기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또는 전화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합니다. 회원은 동의하는 갱신 또는 대체발급된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집니다.
- ⑥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5조 (카드의 관리)

-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인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②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구매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카드 사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③ 갱신은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및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잠정하여 분리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怠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6조 (연회비 청구)

- ① 연회비는 카드사가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됩니다.
- ②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별 등 분납 청구도 가능합니다.
 1. 제1회분의 분납회비가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큰 경우
 2. 회원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에 회원에게 부과된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상환 청구금액이 없는 경우
- ③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와 갱신발급 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④ 카드사는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에게 청구기준 및 청구금액 등을 안내합니다.
- ⑤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6조의2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 ①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날부터 일괄 계산(회원의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를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②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사는 제2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 방식을 상세히 해당 카드사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④ 카드사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청기 사유 및 회계연도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7조 (카드의 사용)

- ① 회원은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이용 정지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메시지 또는 전화로 이용 정지 요청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카드사가 과실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설정 등에 따라 휴대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당일 고지).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 다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5.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카드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6.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미인,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 ②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③ 카드사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연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등)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 사용 중지된지 이후 해외에서 회원의 승인 없이 정지표가 매입되는 가계(이하 "해외 무승인매입"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문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⑤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당일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문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7조의2 (카드의 한도감액)

- 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이용한도를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대폰 메시지 또는 전화로 한도감액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카드사가 과실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설정 등에 따라 휴대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도감액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없이 이용한다 고액액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당일 고지).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 또는 다른 금융 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5.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구속 등으로 회원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의3 (카드의 해지)

- ① 회원은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영업일 이내 카드이용정지 없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카드사는 별도의 안내없이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파산, 개인회생 신청 등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3. 미인,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5.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등)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사용이 해지된 이후 해외 무승인매입이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문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 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반납하고, 카드사는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4 (휴면카드 연회비 반환 및 해지)

- ①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정지(없는 카드(이하 "휴면카드"라 함)로 된 경우,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서 서면, 전화, 구속 17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 유지 또는 이용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5항에 따라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가족카드 중 본인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이나 가족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가 아닌 경우 본인회원의 카드
 2.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능(하이패스카드), 현금인출 기능 등 카드에 부가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휴면카드
-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등으로 해지 사실을 밝힌 경우 카드사는 이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
- ③ 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카드사에 계약 유지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 ④ 정당한 다른 이용정지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차년도 연회비 청구일과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연회비 반환규정을 준용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환금액은 이용정지 사유 발생된 날부터 일괄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 ⑤ 제3항에 따라 이용정지된 신용카드는 유효기간 종료 시 갱신하거나 대체발급할 수 없으며, 이용 정지 상태에서 카드가 부정사용됨으로 인해 회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카드사가 부담됩니다.

제3장 카드의 이용

제8조 (카드의 상품)

- ① 회원이 카드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려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해외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사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회원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이용과 서명 생략으로 얻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영수증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③ 본 카드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할부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원은 본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⑤ 카드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병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 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사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카드의 해외이용 등)

- ①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의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경우 통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③ 회원은 국내 및 해외사용 겸용으로 발급된 카드의 경우 해외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C칩 비반납조건(이하 "PIN"번)라 함]이 등록되지 않은 카드 및 일부 해외가맹점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카드의 이의신청)

- ① 체크카드와 결합된 카드의 신용공여 이용한도는 신규가입을 할 경우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카드사의 심사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별도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② 회원은 체크카드를 이용한 거래금액이 체크카드 연결계좌의 예금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한도 내에서 신용구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사는 카드의 유효기간 이내 및 유효기간 경과 후 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정지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작성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문 메시지, 팩스(FAX), 이음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④ 카드사는 신용한도 조약 시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과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됩니다.(회원 사전에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카드사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다만,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문 메시지, 팩스(FAX), 이음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항에 따라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문 메시지, 팩스(FAX), 이음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⑥ 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이음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 응답서비스(ARS), 안내전화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1조 (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 ① 카드사는 카드사 특정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 한 경우라도 전이유형은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회원이 개인정보 삭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탈퇴/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탈퇴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통보를 안내 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개인정보 또는 여신전문금융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퇴/개인정보삭제 요청인 경우, 해당 카드사는 잔여포인트 사용 또는 사용은 별도의 통보 절차를 위하여 합니다.
- ② 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 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를 발급할 경우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1. 포인트의 적립, 사용, 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2. 포인트 적립률, 사용대상, 사용자별 최소적립기준, 유효기간,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3. 포인트 적립 제한(연도, 적립한도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4.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포인트의 종류
 5. 피상속인의 포인트 상속절차 및 상속 포인트 사용방법
- ③ 제2항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카드가 유효기간 만료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카드사의 휴업·도산·경영상,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제27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 ①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 이용 일시, 이용내역,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게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는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 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8조 (카드의 분실, 도난신고와 보상)

-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 시간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28조제3항3호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사는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분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1만원 이하의 보상처리수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한)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2.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한다)
 - 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하였으나 회원 본인이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령·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회원의 허위신고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원과 카드사는 분실·도난 조사에 상호간 성실할 임하도록 합니다.

제29조 (위·변조카드 사용 등에대한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카드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 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2.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 “이용자”는 “신용카드회원”으로 본다)
- ③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할 경우 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0조 (비밀번호 관련 책임)

- ① 회원은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성 내용대로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와 같은 거래를 처리합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제31조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 ① 카드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제휴업체·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②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 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카드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2.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 ④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업 감속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2조 (변경사항의 통지)

- ①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자기이체계좌, 전자우편(E-MAIL),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기이체계좌를 변경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대신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8장 보칙

제33조 (위반할 경우 책임)

- ① 카드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34조 (변경승인 등)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약관 개정이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회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메일 알려드립니다.
 1. 카드사가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요율 또는 연회비를 인상할 경우
 2. 카드사가 결제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
 3.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개별 통지 및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 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자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든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⑤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회원의 이용대금명세서 수령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동 수령방법 변경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도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5조 (경과 조처)

- ① 제7조 제1항 및 제7조의2에 따라 카드이용 정지 및 이용중도 감액에 대한 사전 통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② 제11조 제3항의 포인트 사용비용 제한 규치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에 적용합니다.
- ③ 제11조 제7항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④ 제34조 제5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한 회원에게 적용합니다.
- ⑤ 제7조의4는 이 약관 시행일 이후 휴먼카드 사유로 회원에게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는 건부터 적용합니다.
- ⑥ 제11조의2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합니다.
- ⑦ 제3조의2제3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합니다.
- ⑧ 제7조의4제4항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휴먼카드 사유로 이용정지가 된 건부터 적용합니다.

- ⑨ 제11조제10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합니다.

- ⑩ 제20조제6항은 2021년 1월 29일부터 적용합니다.

제36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규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7조 (관할법원)

- ①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의 본점, 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관할법원,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부속약관

시행일 : 2021.01.01

제1조 (목적)

- 이 부속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연회비 등)

- 체크카드와 결합된 신용공여가 부여된 카드의 연회비는 회원에게 발급된 카드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카드의 등급별, 종류별 금액은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재발급카드 등의 이용)

- ① 카드사와 별도로 약정된 가맹점에서의 보충료, 통신포함의 결제 등 회원의 신청에 의한 계속적·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를 위하여 카드사는 재발급된 카드번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의 명시한 기점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카드가 갱신 대체 재발급의 사유로 신카드가 발급된 상태에서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및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구카드 폐기 전까지 구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 내용은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제4조 (이용할도의 특례)

- 카드사가 지정한 특정 승인건(통신포함, 보충료 등 자동이체청구, 철도·승차권 등 반환 수수료 청구, 항공기 기내판매, 교통카드 사용·청구 등)에 대해서는 이용할도에 관계없이 무승인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대금 선결제 기한)

-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 10항에 의한 선결제하는 카드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출금이체)

- ① 회원은 카드사의 결제일(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카드사가 청구하는 카드대금을 회원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하기로 합니다.
- ② 회원이 사정으로 출금이체의 결제계좌를 변경할 경우에 회원은 체크카드 발급 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체크카드 발급 기관은 회원의 신청내용을 확인합니다. 만일 결제계좌 불일치로 인해 불응처리 된 경우의 손해에 대하여는 회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단,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③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 또는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출금한도(이체 처리잔액)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 ④ 출금이체의 출금한도는 결제계좌의 출금한도(자동대출유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까지로 하며 지출 총금일에 입금된 모든 수표는 제외합니다.
- ⑤ 결제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을 경우 출금 우선 순위는 체크카드 발급 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합니다.
- ⑥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계좌일은 카드사가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결정되며, 카드사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입니다.
- ⑦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결제계좌에서의 출금은 카드사의 청구대로 체크카드 발급 기관에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카드사와 협의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제7조 (당연 기한이익의 상실)

- 회원은 제 예치금 및 카드사가 제공한 담보 등에 대하여 임류,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카드사로부터 통지 또는 최고 등이 없더라도 카드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 곧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제8조 (상계)

- 제7조의 당연 기한이익의 상실, 카드이용대금의 변경기한 도래, 표준약관 제14조에 의한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사유로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카드사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와 회원의 예치금 및 기타 채권에 대해 지점지지 조치를 취한 후 서면 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